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371호
- 나. 제안자 : 아이수루 의원(찬성자 33명)
- 다. 제안일 : 2025. 2. 3.
- 라. 회부일 : 2025. 2. 5.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및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수도권 내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족해 본 조례 개정으로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의3)
-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2. 11. ~ 2. 15.) 결과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글로벌도시정책관) : 원안 가결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다문화사회 구성에 이바지하고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7조의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25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p><u>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 교육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3.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신설>	<p><u>제2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대학,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제25조 (생략)	제26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나. 검토 내용

“조례 개정의 필요성”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안 제7조의3)과 교육청, 대학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안 제25조)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 교류 확대와 문화적 개방성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체류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¹⁾
- 저출생·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교육과 부모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다양한 유형 및 구성, 그리고 외국인·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조례 개정의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²⁾하고 있고, 서울시는 ‘부모교육’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1) 서울특별시 다문화가구의 자녀 현황

2019년 36,299명 → 2020년 37,293명 → 2021년 38,123명 → 2022년 38,792명 → 2023년 39,437명

출처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

2)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2014. 1. 9. 제정·시행),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2016. 7. 14. 제정·시행)를 포함한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제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주요 조문별 검토”

①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안 제7조의3)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3.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현행 조례 제7조는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3은 시장이 행정 및 생활 교육, 언어 교육, 자녀 교육 정보 제공 등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다문화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또는 다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 내용과 범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부모교육 이외의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문의 제목 또는 지원 사항과 범위를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협력체계 구축(안 제25조)

제2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대학,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는 서울시가 교육청, 대학,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법인, 단체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현행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관련 기관, 관련 단체·학계 전문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운영 중(붙임 2 참조)이고 시책사업(현행 조례 제17조)이 추진 중임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의 협력체계로서의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2.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제14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3은 시장이 행정 및 생활 교육, 언어 교육, 자녀 교육 정보 제공 등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다문화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현행 조례 또는 다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 내용과 범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부모교육 이외의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문의 제목 또는 지원 사항과 범위를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는 현행 조례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현행 조례 제8조 부터 제16조까지)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관련 기관, 관련 단체·학계 전문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운영 중(붙임 2 참조)이며 시책사업(현행 조례 제17조)이 추진 중임을 고려할 때, 협력체계로서의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붙임 1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부모교육 관련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25년 예산 (백만원)	비고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로 교육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결혼이민자 - 내용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각 1회 교육(총 3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 ~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내용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1,82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국시비 매칭 (3:7)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12세 이하)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정도 평가 -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 언어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1,29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국시비 매칭 (3:7)
3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舊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부부·가족단위 코칭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 자율적으로 운영 	22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국시비 매칭 (3:7)
4	다문화 엄·빠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거주 다문화가족 학부모 ○ 내용 :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학습지도(학교과목 위주) 능력 향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자치구가족센터 3개소 내외 - (예산지원) 교재비, 강사비 등 학교 운영비 개소당 10~30백만원 차등지원 	50	시비사업 (100%)

붙임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연령)	소속·직위	주요경력	최초 위촉일자
1	공무원 (당연직)	김태균 (남, 1969)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인사 발령일
2		이해선 (남, 1974)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인사 발령일
3	시의원	윤종복 (남, 1948)	서울시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2.7.~)	'24.10.28. (신규)
4	유관기관 (2명)	이원호 (남, 196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사법과장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24.12.20. (신규)
5		홍승균 (남, 1968)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장학관	- 인현고등학교 교감 -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24.12.20. (신규)
6	학계 (3명)	박경태 (남, 1961)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장 - 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전문위원	'22.12.20. (연임)
7		정영순 (여, 1972)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객원교수	- 현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 국제 이중언어 및 다문화위원회 위원 (2017-2022)	'24.12.20. (신규)
8		고선강 (여, 1972)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24.12.20. (신규)
9	외국인 관련 기관 단체 (4명)	박연진 (여, 1974)	송파구 가족센터장	- 서울시가족센터장 협회 회장 - 한국가족센터협회 부회장	'22.12.20. (연임)
10		안진경 (여, 1980)	성동외국인노동자 센터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 호협의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분야 인권강사	'24.12.20. (신규)
11		박민정 (여, 1974)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협의회 자문위원 -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자문위원 - 서울시 민관협력TF 자문위원	'24.12.20. (신규)
12		이회영 (여, 1984)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업운영팀장	-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3.8~2021.2)	'24.12.20. (신규)
13	주민대표 (3명)	문현택 (남, 1963)	한중포커스 신문사 대표	- (사)동포교육지원단 이사 -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22.12.20. (연임)
14		서지안 (여, 1995)	서울시 문화다양성 교육 강사	- 용산구 가족센터 근무 - 경찰서 수사 통번역 요원 - 법원, 구치소 법정 통번역인 - 이주배경청소년재단 심리상담 통역 사	'24.12.20. (신규) (청년)
15		안토니 라우 (남, 1997)	클로버게임즈	-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인턴 - 서울대학교 한국학 석사	'24.12.20. (신규) (청년)